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767
----------	-------

발의연월일 : 2026. 7. 6.

발 의 자 : 조인철 · 정준호 · 주철현  
이정문 · 허 영 · 어기구  
김동아 · 이해민 · 서천호  
김우영 · 김 현 · 서삼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후면에만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무인 단속 장비 등으로는 이륜자동차의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단속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교통단속, 범죄 예방 및 사고 조사 과정에서 이륜자동차를 신속하게 식별하기 곤란하여 보행자와 운전자 등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최근 배달 산업 확산 등으로 이륜자동차 운행과 법규 위반 행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전면 번호판 부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현행법상 부착 근거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제작·수입 단계에서 전면 번호판 부착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효과적인 단속 및 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이륜자동차번호판 부착 위치를 전면 및 후면으로 확대하되, 세부 사항은 이륜자동차의 용도·전면부 구조 및 주행 안전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아울러 이륜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전면 번호판 부착 장치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이륜자동차 운행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등).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후면의”를 “전면 및 후면의”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을 “각각”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대상·위치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륜자동차의 용도·전면부 구조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이륜자동차번호판 부착 장치의 설치) 이륜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이륜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이륜자동차의 앞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4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9조의2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앞면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면 이륜자동차번호판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면 이륜자동차번호판 부착 장치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륜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륜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면 이륜자동차번호판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후면에만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이륜자동차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전면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의무) ①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u>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u>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u>&lt;후단 신설&gt;</u></p> <p>② (생략) <u>&lt;신설&gt;</u></p>	<p>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의무) ① -----<u>전면 및 후면의</u>-----<u>각각</u>-----</p> <p>-----<u>. 이 경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대상·위치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륜자동차의 용도·전면부 구조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49조의2(이륜자동차번호판 부착 장치의 설치) 이륜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이륜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이륜자동차의 앞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u></p>
<p>제8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p>	<p>제84조(과태료) ① -----</p>

<p>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5. (생략)</p> <p><u>&lt;신설&gt;</u></p>  <p>② ~ ⑥ (생략)</p>	<p>-----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제49조의2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앞면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u></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	---